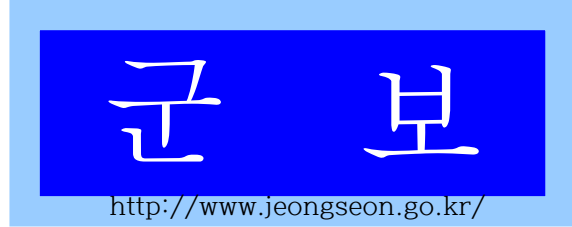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4호 2020. 1. 17. (금)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호 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4호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0-13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10
- 정선군 고시 제2020-14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12
- 정선군 고시 제2020-15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14
- 정선군 고시 제2020-1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16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18
- 정선군 공고 제2020-11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19
- 정선군 공고 제2020-26호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20
- 정선군 공고 제2020-29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실시계획인가 공람 ·
공고.....23
- 정선군 공고 제2020-38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27
- 정선군 공고 제2020-48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29
- 정선군 공고 제2020-5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42
- 정선군 공고 제2020-60호 분묘개장공고(1차).....4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호

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 칭 : 정선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 적	면 적	규 모	
공공청사	정선경찰서	8,739㎡	8,739㎡	- 건축면적 : 2,163.40㎡ - 연면적 : 6,926.13㎡ - 층수 : 지상4층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강원지방경찰청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 : 2019.12.31. → 변경 2020.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 토지조서

(단위 : m²)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계		2필지		8,844	8,739					
1	정선읍 봉양리	316	대	8,767	8,662	국(경찰청)				
2	정선읍 봉양리	403-10	대	77	77	정선군				

정선군 고시 제2020-4호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야생화쿠키체험장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일원

다. 면 적 : 49,221㎡(지구단위계획구역 : 46,030㎡, 군계획시설(도로) : 3,191㎡)

라. 사 업 시 행 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221	-	49,221	100.0	
관리 지역	소 계	46,252	-	46,252	94.0	
	보전관리지역	222	-	222	0.5	
	계획관리지역	46,030	-	46,030	93.5	
농림지역		2,969	-	2,969	6.0	

②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2	50	8~13	국지 도로	340	소로 2-지414호선 (산216-16임)	소로 1-1호선 (고한리 5-26잡)	일반 도로	-	강원도 고 시 제2013-230호 (2013. 6.7)	진입 도로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46,030	-	46,030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58	소로 2-50호선 (고한리5-26잡)	고한리 5-26잡	일반 도로	-	강원도 고시 제2013-230호 (2013. 6.7)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구 번 호		가 구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6,030	-	46,030	
I	관광휴양시설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7,241	증)1,166	18,407	
II	공공시설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201	감)1,166	13,035	
III	녹지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14,588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6,030	-	46,030	
I.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7,241	증)1,166	18,407	
I-1	탄광체험시설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0,277	-	10,277	
I-2	탄광체험시설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6,964	-	6,964	
I-3	탄광체험시설③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	증)1,166	1,166	
II. 공 공 시 설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201	감)1,166	13,035	
II-1	Main Gate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54	-	254	
II-2	오수처리장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99	-	199	
II-3	광장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51	-	2,151	
II-4	광장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344	감)1,452	892	
II-5	주차장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99	감)32	2,167	
II-6	보행자도로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490	-	2,490	
II-7	도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4,564	-	4,564	
II-8	보행자도로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	증)318	318	
III. 녹 지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	14,588	
III-1	조경녹지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79	-	79	
III-2	조경녹지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325	-	325	
III-3	조경녹지③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67	-	67	
III-4	조경녹지④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28	-	128	
III-5	원지형녹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989	-	13,98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I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나.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I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I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정선군 고시 제2020-13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4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2-3호선	L=495.0m, B=15.0m	L=351.0m, B=15.0m	L=29.0m, B=15.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740-7	도	2,032	461	봉양3길21	정선군	-	-	-
계		1필지		2,032	461					

정선군 고시 제2020-14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3-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2-5호선	L=113.0m, B=8.0m	-	L=86.8m, B=8.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633-10	전	682	642	봉양3길21	정선군	-	-	-
2	임계면 송계리	633-11	전	106	8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2필지		788	722					

정선군 고시 제2020-15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정선군고시 제2001-83호(2011. 11. 17)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상 협의 불가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폐지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 폐지의 위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97-9번지 일원

나.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사업
-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

다.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시설명	군계획결정(m ²)		실시계획인가폐지(m ²)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면적·규모	
도로	소로3-10호선	L=99.0m, B=6.0m	L=99.0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0-1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강원도고시 제2652호(1974. 4.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상 협의 불가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폐지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 폐지의 위치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7-3번지 일원

나.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사업
-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개설공사

다.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폐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면적·규모	
도로	소로1-2호선	L=510.0m, B=10.0m	L=228.23m, B=10.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4번지 일원

다. 면 적 : 48,709m²

라. 주요변경내용 : 고한구공탄시장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관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도로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사무소

나.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0. 01. 03. ~ 2020. 01. 20.)

4.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사무소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고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선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조례 제정·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정 선 군 수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조 례 외국인			
33,091	33,050	41	34	33,057	-

□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3년경과등록 외국인			
33,086	33,050	36	34	33,052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3년경과등록 외국인			
33,086	33,050	36	34	33,052	-

정선군 공고 제2020-26호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공모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정 선 군 수

1. 모집분야 : 도시계획·토목·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사회·문화 등
2. 모집인원 : 00명
3. 위촉기간 : 2020. 2. 13. ~ 2022. 2. 12.(2년, 3회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선군 군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위원자격
 - 도시계획관련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학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바. 모집분야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근무경력 5년 이상

6. 선정기준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위원회 활동경력이 풍부한 자
- 다. 성별, 연령별, 대학별 등으로 적정한 인원 선정
- 라.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마. 기타 참고사항
 -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단,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7.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나.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관련 양식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8.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20. 1. 06.(월) ~ 1. 22.(수)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다.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e-mail : jcw2055@korea.kr

9.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3회 연임가능)이며,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에서 수당을 지

급함

바. 위원회 명단이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사.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29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67호(1986. 6. 07.)로 최초 결정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04-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면사무소 뒤))]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2-1호선	L=1,308m, B=15.0m	L=956.7m, B=15.0m	L=351.3m, B=15.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1. 10.~2020. 1. 28.)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6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북평면 북평리	204-9	답	131.0	131.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258-2	정 선 용	-	-	-
2	북평면 북평리	204-48	답	61.2	61.2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장열리 109	최 준 식	-	-	-
3	북평면 북평리	204-46	답	472.9	472.9	강원도정선군 정선읍정선로 1333	김 오 태	정선읍 봉양리329-6	정선군 산림조합	근저당 지상권
4	북평면 북평리	204-54	전	397.2	397.2	강원도정선군 정선읍정선로 1333	김 오 태	정선읍 봉양리329-6	정선군 산림조합	근저당 지상권
5	북평면 북평리	204-53	전	11.6	11.6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247-3	정 선 군	-	-	-
6	북평면 북평리	204-50	전	15.0	15.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247-3	정 선 군	-	-	-
7	북평면 북평리	204-49	전	61.3	61.3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247-3	정 선 군	-	-	-
8	북평면 북평리	204-51	전	534.5	534.5	-	정 선 군	-	-	-
9	북평면 북평리	149-74	전	40.5	40.5	-	정 선 군	-	-	-
10	북평면 북평리	149-77	전	523.5	523.5	-	정 선 군	-	-	-
11	북평면 북평리	222-4	전	91.4	91.4	-	정 선 군	-	-	-
12	북평면 북평리	210-21	답	69.0	69.0	서울시중랑구 중화동 131-19	고순갑 외1인	-	-	-
13	북평면 북평리	210-22	답	504.0	504.0	-	정 선 군	-	-	-
14	북평면 북평리	210-19	전	458.9	458.9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신길중 양로1길45-13	이 용 회	서울중구통일 로120	농협은행주식 회사	근저당
								경기시흥시수 인로3413번길 44-22	(주)대창상사	근저당
								서울강남구논 현로508	(주)에스리테일	근저당
15	북평면 북평리	214-3	전	494.7	494.7	-	정 선 군	-	-	-
16	북평면 북평리	149-75	대	22.8	22.8	-	정 선 군	-	-	-
17	북평면 북평리	215-2	전	537.8	537.8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8 길 28	문 춘 녀	-	-	-
18	북평면 북평리	149-76	전	339.4	339.4	-	정 선 군	-	-	-
19	북평면 북평리	149-78	전	1.4	1.4	-	정 선 군	-	-	-
20	북평면 북평리	149-79	전	1.9	1.9	-	정 선 군	-	-	-
21	북평면 북평리	149-80	전	1.4	1.4	-	정 선 군	-	-	-
계		21필지		4,771.4	4,771.4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북평면 북평리	204-10	가옥	함석 및 벽돌	m ²	45.84	북평면장열 리109	최준식	-	-	-	

정선군 공고 제2020-38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

정선군 공고 제2020-32호(2020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2에 따라 정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정 선 군 수

1. 사업종류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2. 사 업 명 : 2020 정선시티투어버스
3. 공고기간 : 2020. 1. 9. ~ 2020. 1. 13.
4. 신청 접수기간 : 2020. 1. 14. ~ 2020. 1. 16. (3일간)
5. 한정면허 내용

가. 운행구역

노선명	운행코스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하이캐슬리조트(11:10) ⇨ 마운틴콘도(11:20) ⇨ 컨벤션호텔(11:30) ⇨ 민동산역(11:40) ⇨ 정선역(12:20) ⇨ 정선5일장 ⇨ 스카이워크·아라리촌 ⇨ (선택관광) 덕우리체험마을 or 화암동굴 or 화암약수·소금강길 ⇨ 정선역(17:25) ⇨ 민동산역(18:05) ⇨ 하이캐슬리조트 ⇨ 컨벤션호텔 ⇨ 마운틴콘도
KTX열차 연계형 노선	진부역(11:00 탑승) ⇨ 파크로쉬·파인포레스트(11:30) ⇨ 스카이워크(12:00) ⇨ 정선아리랑시장(12:30) ⇨ 레일바이크(14:50) ⇨ 아우라지/주례마을(16:20) ⇨ 백석폭포(18:00) ⇨ 진부역(18:50)

나. 운행대수 : 2대(노선별 1일 1대)

다. 서비스의 수준 :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라. 면허기간

-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 2020.1월 발급일. ~ 2020.12.31.

- KTX열차 연계형 노선 : 2020.1월 발급일. ~ 2020.6.30.

마. 보조금의 지급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바. 한정면허 신청자격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자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1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6)
-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마.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각 1부

7. 사업자 선정 절차

- 정선군 공고문-32호(2020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에 따라 낙찰예정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면허 서류심사 후 면허 발급

8. 접수처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033-560-2366)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때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각 지침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교통행정팀(560-236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48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 목욕, 이·미용 서비스 제공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75세 이상 사람으로 한다.

나. 지원내용(안 제4조)

- 목욕, 이·미용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권사용(안 제8조)

-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 사용하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라. 이용권정산(안 제9조)

- 업주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 청구하며, 읍·면장은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이내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 10. ~ 2020. 1. 3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75),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령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상 만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5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목욕,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시·군·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다음 날부터 중지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군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1명 당 월 1만원으로 한다.
2.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지난 분기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이미 지급한 이용권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잔여일에 해당하는 이용권은 별도 회수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급기준일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이용권 사용 협약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업소의 업주와 이용권 사용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권사용) ① 이용권은 제6조에 따라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이용권정산) ① 이용권을 받은 업소의 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록, 이·미용서비스 대금 지급청구서, 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이용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사용 또는 부정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이용권 수불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권 수불상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용권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년도 분기 NO.**어르신 목록, 이·미용권
금 원****정 선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목록,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선군 관내 목록, 이·미용 지정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 20 . . . ~ 20 . . .
4. 지급일자 : 20 . . .
5. 지 급 자 : 000행정복지센터 000 (인)

**어르신 목록, 이·미용권
사용가능업소**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 서비스 지원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지 원 내 용		10,000원/월/분기1회 30,000원을 목욕, 이·미용권을 지원 (사용기한 - 해당 연도 12월15일까지, 초과비용 본인 부담)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준 1.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2. 목욕, 이·미용권은 정선군내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목욕,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처리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아·미용 서비스 대금 지급 청구서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구분	☐ 목욕 ☐ 미용 ☐ 이용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이용매수	매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정선군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목욕,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및
아·미용권 발급대장**

(분 기)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일자	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제작매수										
배부매수										
반납매수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권 수불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권 지급대상

(0000년 ○분기)

[illegible]

관 련 법 령 발 취 문

관련법령	내 용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1호, 2018.12.11.,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2018.10.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관련법령	내 용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12.31,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公款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公款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주민등록법 [법률 제14286호, 2016.12. 2., 일부개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정선군 공고 제2020-5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에서만 통용가능한 정선아리랑 상품권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 나. 상품권 구매 시 포인트 적립 한도액 및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선아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 한도액 및 포인트 적립률 조정(안 제6조)
 - 포인트 적립 한도액: 월 50만원 이내 ⇨ 월 100만원 이내
 - 포인트 적립률 : 3% ⇨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전화 : 033-560-2358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3% 이내의 범위에서”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6조(상품권이용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가 희망할 경우 <u>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3% 이내의 범위에서</u> 해당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5,000원 단위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이용 활성화 지원) ----- ----- <u>1인당</u> <u>월10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u> ----- ----- ----- -----.		

정선군 공고 제2020-60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정 선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12-3	전	1	

2. 개장사유 :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장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3500-34(정선하늘터)
- 봉안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정선하늘공원)
-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85)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